

투자유의사항

가. 공모전 투자자

1. **합병 의사결정시 의결권,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됨을 유의합니다.**
 - 상장 신청시 주주(CB 등 소유자 포함)간 체결한 의결권 행사 금지(또는 예탁원 위탁)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지 약정서 제출 필요
2. **CB 등 발행은 상법상 사채발행 제한*이 있음을 유의합니다.**
 - 사채발행총액의 순자산 4 배 초과 금지(상법 §470)
 - cf) 상장법인은 CB, BW 에 한해 발행한도 없음(자본시장법 §165 의 10)

나. 공모 이후 투자자

1. **공모가격의 적정성 판단시 희석비율***을 체크합니다.
 - $\text{희석비율} = [\text{공모가} - 1 \text{ 주당가격} (= \text{총발행액} \div \text{총주식수})] / \text{공모가}$, 미국은 20%수준
 - 희석비율을 증권신고서에 공시하는 의무 부과(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)
2. **정관상 합병대상회사가 속하는 업종의 동향 및 전망을 체크합니다.**
 - 합병전까지는 정관 기타 공지를 통한 대상법인 특정이 금지됨을 유의
3. **금융투자업자(대표발기인), 경영진의 M&A 경력 등을 체크합니다.**
4. **합병등기 전까지 예치자금 인출*/담보제공이 금지됨을 유의합니다.**
 - 예외 : 합병 반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및 해산시 인출 허용
5. **해산시 채권자 및 주주간 잔여재산 배분기준을 체크합니다.**
6. **SPAC 이 합병에 실패하여 해산할 경우, 시장에서 취득한 가격이 아닌 공모가의 일정비율에 해당되는 금액(각 SPAC 의 정관 및 증권신고서에 반환금액 산정방식 명시)이 반환된다는 점에 유의합니다.**

다. 합병희망 비상장기업

1. **SPAC 정관상 합병대상업종*** 등을 체크합니다.
 - * 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동일업종 판단, 합병전 특정은 금지됨을 유의
2. **SPAC 의 존속기한*이 얼마 남았는지 체크합니다.**
 - * 최장 3 년이지만 기한만료 6 개월전부터 합병상장신청이 제한됨을 유의
3. **1 년이상된 SPAC 의 경우에만 합병과세 이연이 허용(법인세법) 됨을 유의합니다.**

기업인수목적회사(SPAC)의 역설(Paradox)

SPAC 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본래 목적인 비상장기업과의 M&A(합병)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힘들게 되는 현상

주가가 올라 SPAC 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비상장기업과 합병 시 SPAC 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합병대상 비상장기업의 주주가 받게 되는 **합병주식의 지분율이 낮아지게 된다.**
만약 이러한 이유로 **합병(M&A)이 실패하여 SPAC 이 해산하게 되면** 공모가격에 비해 고가로 취득한 후발투자자는 공모가격수준의 원금보장만을 받게 되므로 주가가 오를 만큼 손실폭도 커지는 **악순환**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.



※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,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.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